

에듀테크

공부혁명 엠북(mbook.kr)

MEDICAL CARE & HEALTHY



2026

방사선사 의료관계법규

- ☆ 3시간 26분 완성, 고득점용
- ☆ 의료법, 의료기사법, 지역보건법
- ☆ 최근 법령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종합 정리

도서명 : 방사선사 의료관계법규

ISBN : 979-11-7393-256-4

발간일 : 2026-05-20

형식 :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23,000원



방사선사 의료관계법규

[목차]

제1편 의료법(p3)

제2편 의료기사법(p108)

제3편 지역보건법(p143~175)

[약어]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부령은 보건복지부령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붉은색은 시행예정

초록색은 최근(1~2년내) 개정 내용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편 의료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4)

제2장 의료인(p10)

제3장 의료기관(p39)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p72)

제5장 의료광고(p74)

제6장 감독(p80)

제7장 삭제

제8장 보칙(p95)

제9장 벌칙(p102)

[약어]

국가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군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 군, 구

지자체장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부령은 보건복지부령

청장은 질병관리청장

개설자는 의료기관 개설자

환자등은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학등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의사등은 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

의사회등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 의사회

중개업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제1장 총칙

1~3조

1.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 받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국민 건강 보호/증진

2. 의료인

- 장관 면허 받은 의사등, 조산사, 간호사
- 다음 임무를 수행해 국민보건 향상,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
 - 가) 의사는 의료, 보건지도
 - 나)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 구강 보건지도
 - 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 한방 보건지도
 - 라) 조산사는
 - 조산, 임산부/신생아 보건, 양호지도
 - (26년 11월 12일 부터) 조산, 임산부/태아/신생아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양호지도
 - 마) 간호사는 간호법상 업무

3.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이나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 하는 곳
-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시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해 고시

가.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등이 주로 외래환자 대상 의료행위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나.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 임산부/신생아 대상 보건활동, 교육/상담

다.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등이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

1) 병원등 (병/치/한/요)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요양병원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병원등 요건 갖춘 의료기관 포함

2) 정신병원, 종합병원

4. 병원등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 갖춰야 함
- 요양병상은 장기입원 환자 대상 의료행위 위해 설치

5. 종합병원

가. 요건

- 1) 병상 100개 이상 및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둘 것
- 2) 필수진료과목
 - a) 병상 100~300

-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포함 7개 이상의 진료과목
- b) 병상 300 초과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 포함 9개 이상 진료과목

나. 추가 진료과목

- 필요시 설치/운영
- 전속아닌 전문의 둘 수 있다

6. 장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 개요

- 1) 지정 요건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전문 종합병원 지정
- 2) 지정시 지정 요건과 전문성 평가 요
- 3)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
- 4) 전문기관/단체에 평가 위탁

나. 지정 요건(기준)

1) 진료기능

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다음 진료과목 중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해 20개 이상 진료과목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1명 이상 둘 것

a) 필수진료과목(9) (내외소/ 산영마/ 진정치)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b) 선택진료과목(18)

-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

나)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을 것

2) 교육기능

-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레지던트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받았을 것

3) 인력/시설/장비 등

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 당 의사 1명, 2.3명 당
간호사 1명 이상

나) 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 설치, 지정 신청일 이전 1년간 전담전문의 각각 1명
이상

다) 품질관리검사에서 CT, MRI, 유방촬영용장치 적합 판정

라)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협력체계 구비

마) 장관 고시 기준에 따라 운영체계, 통제시설, 보안인력 구비

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인력, 중환자실병상,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장관 고시 기준에 따라 확보

4) 질병군별 환자 구성비율

가)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34% 이상
-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 12% 이하
- 장관 고시 질병 외래환자 7% 이하

나) 장관 고시 기준에 따른 진료실적

5) 의료서비스 수준

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받았을 것

- 나) 심장질환, 뇌질환, 암, 항생제 사용 수술 등 장관 고시 평가 항목에 대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평가원)의 가장 최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 장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의 1/2 이상

7. 장관의 **전문병원 지정**

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 특정 질환에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하는 병원 지정

나. 요건

- 1)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비율 등이 부령 기준에 해당
- 2) 부령 수 이상 진료과목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둘 것
- 3) 최근 3년간 의료기관, 개설자가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 받은 사실 없을 것(25년 6월 시행)

다. 지정시 지정 요건과 진료 난이도 평가 요

라. 지정받은 경우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마. 거짓/부정으로 지정/재지정 받은 때 지정/재지정 취소해야 함

바. 다음은 지정/재지정 취소 가능

- 1) 지정/재지정 취소 희망
- 2) 평가 결과 전문병원 요건 미비
- 3) 25년 6월 부터
 - 요건 미비로 시정명령 받고 미이행
 -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 받은 때
 - 소속 의료인, 개설자,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

사. 전문기관/단체에 평가업무 위탁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1.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가. 공통

- 환자에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 노력
- 의료의 질 높임
- 의료기관 내 환자등,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발생하는 의료관련감염 예방
- 의료기술 발전

나. 의료인

- 1) 의료인, 의료법인 등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운영못함
- 2) 다음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투여/채취를 위한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 포함하는 수액세트
 - 감염/손상 위험이 매우 높아 장관이 재사용 금지

다. 의료기관의 장

- 1) 다음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보게 의료기관 내 게시
 - 가) 환자의 권리
 - 진료받을 권리
 - 알권리/자기결정권
 - 비밀 보호받을 권리
 - 상담/조정 신청
 - 나) 환자의 의무

- 의료인 신뢰/존중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 받지 않을 의무

2) 환자등이 의료행위 하는 자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료행위 하는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 의료기관내 명찰 착용 지시/감독

(예외)

- 응급의료상황
- 수술실 내
- 의료행위 하지 않을 때
-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이와 유사한 장관 고시 시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가. 개념

- 다음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않고 통합서비스 제공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 제공하는 입원서비스

- 1) 진료 성격,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 제한 필요
- 2) 생활 여건, 경제 상황 등으로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
- 3) 의료관리상 의사등이 통합서비스 필요 인정

나. 제공

- 1)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공 노력
 - 2)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은 제공 의무
- 단, 군보건의료기관, 법무장관 지정 국립정신의료기관 제외
 - 국가등은 비용 전부/일부 지원 가능

3) 제공기관(병원급 의료기관)

-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 제한, 환자 병문안 기준 마련 등 안전관리 노력
-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 지원

다. 국가등

- 서비스 제공/확대, 제공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시책 수립, 지원

라. 다음 기준 준수

1) 인력기준

-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입원환자 7명, 종합병원은 12명, 병원은 16명 당 1명 이상
- 간호조무사는 입원환자 30명당 1명 이상
- 간병지원인력 1명 이상

2) 시설기준

- 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은 다른 병동과 구별되도록 설치
- 기준에 따라 간호사실, 입원실/복도, 목욕실, 화장실, 비상연락장치, 안전손잡이, 욕창방지용품 설치

3) 운영기준

- 통합서비스 병동 배치 인력은 해당 서비스에만 종사
-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기준과 안전사고 관리지침 작성/비치
- 비상연락장치는 매일 정상 가동 여부 점검

3. 의료인은 면허 대여 금지

- 누구든 면허 대여받거나 알선 금지

4. 의사등 면허

- 가) 의사등이 되려면 다음 자격자로서 의사등 국가시험 합격 후 장관 면허 받아야 함
- 고등교육법상 인정기관(평가인증기구)의 인증 받은 의학등 전공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한의학사 학위 받은 자
 - 평가인증기구 인증 받은 의학등 전공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나 박사학위 받은 자
 - 장관 고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상기 해당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의사등 면허 받은 예비시험 합격자

- 나) 평가인증기구 인증 받은 의학등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을 6개월내 졸업하고 학위 받을 자는 자격자로 봄
-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학위 받아야 면허 받음

- 다)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 인증받은 의학등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원 입학자로서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 받은 자는 자격자로 봄

5. 조산사 면허

- 조산사가 되려면 다음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 합격 후 장관 면허 받아야 함
- 가) 간호사 면허 가지고 장관 인정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 마친 자
- 나) 장관 고시 인정기준 해당 외국 조산사 면허 받은 자
- 다) **간호사 면허 가지고 조산사회 실시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 마친 자(26년 11월 12일 시행)**

6. 간호사 면허(25년 6월 삭제)

7. 의료인 결격자

- 25년 6월 부터 간호사는 간호법 따름
- 가) 정신질환자
- 예외)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시
-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다) 피성년/피한정 후견인
- 라) 금고 이상
- 집행 종료/면제 5년 미경과
-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미경과
- 선고유예 중

8. 국가시험등(이하 시험등)

- 의사등, 조산사 국가시험과 의사등 예비시험
- 장관은,
- 가) 매년 시행
- 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관리 맡기고 예산 보조 가능

9. 응시자격 제한 등

- 가) 의료인 결격자는 시험등 응시못함
- 나) 시험등 부정응시자, 부정행위자